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649호 2018. 6. 12.(화)**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7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8-7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23  
 거창군 고시 제2018-7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24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728호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26  
 거창군 공고 제2018-739호 2018년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공고 ..... 29  
 거창군 공고 제2018-740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공고 ..... 30  
 거창군 공고 제2018-748호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39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8-13호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 61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거창군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거창군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재무과 재산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li> <li>*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거창군의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재무과 재산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창군공공단체사무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4길 60	재무과 재산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가조 종합복지회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79	가조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li> <li>*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 대상입니다.</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거창박물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문화관광과 박물관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li> <li>*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 대상입니다.</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거창문화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li> <li>*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 대상입니다.</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월성청소년 수련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일 성 로 1312-96	평생교육센터 청소년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li> <li>*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 대상입니다.</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거창군 실내체육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체육시설 사업소 체육시설담당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장풍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장풍리	건설과 건설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연장 20미 터 이상 도로교량	*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황강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1127-54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교 (원농산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341-7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소정교 (소정진입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094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수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78-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초교(구)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85-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53-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백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101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곡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외룡리 1346-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35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궁항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138-1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피하정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67-16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촌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촌리 산73-8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동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 98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승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 양길 2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탑불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빙기실길 2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503-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계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80-6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 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선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8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송라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남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48-4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초소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성길 1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견2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26-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원천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748-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998-14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 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옥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247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북교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163-10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삼거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1155-4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오산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69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기1구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376-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호교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24-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내계2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498-16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암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마가들길 39-2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천새마을교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강천장교길 429-2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광교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962-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구송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1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림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신리 1337-3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릉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68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동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원동길 46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상수월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길 167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성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022-8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례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00-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평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739-157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정소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86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동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추동길 1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계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217-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몽석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160-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사마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희동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1091-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오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581-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실교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1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창지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952-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금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739-27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초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407-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리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면리 6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안들농로교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공항리 909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룡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263-90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당소농로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용당소 1길 2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곤지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195-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생초교(신)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85-3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가천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어리 148-1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야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산91-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금실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어리 200-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지산2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29-2	건설과 도로담당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li> <li>*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 【특용작물(인삼) 재배】
2. 사업내역

( 단 위: 천 원 )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83-10	56,419	8,830	13,860천원	▶ 당초: 2017. 5. 27. ~ 2018. 5. 26. ▶ 변경: 2017. 5. 27. ~ 2018. 8. 31.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561	김 영 환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6월 8일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39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016-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893-4	2009-12-28	2018-06-13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93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39	2009-04-01	2018-06-13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쳐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5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82-22	2009-04-01	2018-06-13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군사가 진을 쳤던 곳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16-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293-18	2009-12-28	2018-06-13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변경)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7일

거 창 군 청



###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붙임 참조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4. 지정권자: 거창군수

5. 소규모 위험시설 명칭 및 위치 구간 등: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 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7.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8. 행정예고

가. 공람기간: 2018년 6월 7일 ~ 2018년 6월 26일(20일간)

나. 공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33)

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8년 6월 7일 ~ 2018년 6월 26일(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055-940-3529)

다. 제출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건설과

라. 내 용: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작성(서식 - 불임참조)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2.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대상지(별첨) 1부.

(붙임 1)

주 민 의 건 제 출 서			
공고(안)명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지정·고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역(지구)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청 귀하			

거창군 고시 제2018 - 739호

## 2018년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거창군수

1. 공 고 명: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2018. 06. 08. ~ 2018. 06. 22.(15일간)
  3. 대 상 지: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산122외 81필지(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4. 해제 사유
    - 해 제: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5. 지정예정일: 2018. 6월 중
  6.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끝.

##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짖이 사랑방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 거창군수

1. 지정 연월일 : 2018. 6. 10.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명칭 · 위치 및 규모

- 명 칭 : 참깨비 마을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일원
  - 체험관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6번지
- 규 모
  - 체험시설 연면적309.09m<sup>2</sup>(체험, 편의시설 등)
  - 숙박시설, 야외 취사장 등 연면적 349.88m<sup>2</sup>(숙박)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대 표 자	주 소
이 *범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745-*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 · 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 · 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조건

사업자는 참깨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에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I

### 일반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거창군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II

### 재산 관리

-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사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 III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군수는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상기사유 이외에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 IV

#### 운영 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군수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군수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① 체험안전보험
  - ② 화재보험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거창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등) 등]은 참깨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참깨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 군수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또한 군수는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실적관리시스템 (<http://www.rucos.kr>)시스템에 매월 익월 10일 이내에 사업실적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b>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b> 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b>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b>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b>가스누설경보기</b> 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b>비상경보설비</b> 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b>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b> 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b>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b> 를 설치하고 <b>휴대비상조명</b> 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b>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b> 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b>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b> 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운영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식당시설을 하는 경우)**

도농교류법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은 도농교류법에 따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며, 장소 및 시설은 타법의 저촉이 없어야 함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는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20만원

##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

### 2. 제정이유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07.3.28.시행)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현행 조례는 여전히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 「거창군 소비자기본조례」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나.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5조)

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 4. 전부개정조례: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8. 6. 11. ~ 2018. 7. 3. / 20일 이상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8. 7. 3.(화)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경제교통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3354, FAX: 055)940-334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소비자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일자	2018. 6. .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 1. 제안 이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07.3.28.시행)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현행 조례는 여전히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 「거창군 소비자기본조례」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나.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5조)

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일이상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 의뢰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군수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군수는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생활 향상 또는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종량제봉투료 등의 지방공공요금으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 ② 제1항 제4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1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7호, 2018.4.30., 일부개정]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7호, 2018.4.30., 일부개정]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①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질의제목 : 경상남도 거창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거창군 기획감사실-7038(2018. 5. 9.)

#### 1. 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2. 의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이유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는 기본적 권리로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호),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2호),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제3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제4호),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5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6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제7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제8호)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제1호),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제2호),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제3호),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제4호)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제1호),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2호),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제3호),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제4호),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제5호),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제6호),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의 책무를 진다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제1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제정되는 조례는 이른바 “임의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여부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사항의 범위에 대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창군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제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아니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모

든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도 거창군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현행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문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반입·판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 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 4조 (군수의 의무)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 대책의 강구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 대책의 강구

5. 소비 생활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 5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해의 방지, 적정한 계량 및 규격의 사용 표시기준의 준수와 공정한 거래의 확립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6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2 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 제 1 절 위해의 방지

제 7조 (위해 물품 등의 제공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제조·수입·판매 등의 중지와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를 권고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 8조 (규격·표시 등의 적정화) 사업자는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적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성분·구조·형태·치수 및 중량 등에 대한 적정한 규격에 따를 것
2. 품질·기능·제조연월일·보존기간·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가격·단위 등을

적정하게 표시할 것

3. 적정하게 계량하고 중량을 명시하도록 할 것
4. 내용물의 보전 또는 품질 보전의 한도를 넘은 포장, 내용물의 가격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간 포장 등 과대 포장을 하지 아니할 것
5. 보증 기간, 수리의 내용 등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적정하게 명시할 것

제 9조 (자동판매기의 관리) 사업자는 상품 등을 자동판매기(이하“자판기”라 한다)에 의해 공급할 때에는 해당 자판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 설치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의 주소·성명·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절 준수 기준 설정

제 10조 (사업자 자율기준의 설정) ①사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이하“사업자단체”)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이하“자율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율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군 기준의 설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율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율기준의 내용이 그 설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율기준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관계사업자의 상당 부분을 점할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서 설치 규정한 거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를 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 (부당거래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한 판단이나 부주의·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중지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3 절 가격동향 등의 조사 및 정보제공

제 13조 (가격동향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생산·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교육실시 등) ① 군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4 절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 15조 (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 및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서신·방문·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환·환불·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동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6조 (피해 구제기준) 소비자 피해의 구제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1. 14)

제 17조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8조 (법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 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을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공표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제 5 절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 20조 (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 1. 14)(타조례개정 2014.12.310

제 2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비자의 교육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5.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 할수 있다. 다만, 공표 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국·공립검사 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타조례 개정 2017.11.29)
- ③ 소비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의 결과를 공표 할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소비자단체는 법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이름(상호 기타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그 사유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 ⑤ 소비자 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⑥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 3 장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 22조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 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의원과 소비자단체·유관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 개정 2016.7.20.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2조)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⑤ 간사는 상공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질병·장기불출 석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 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소비자보호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4.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 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28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6조제4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간사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 29조 (의견청취 및 출석요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 한다)을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한 위원·실무위원 및 출석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 제 4 장 보 칙

제 31조 (보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 위원과 실무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20. 부칙 제2조)

②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2.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규칙의 위임 근거를 개정하고,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을 제한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임·인용조문 변경함(안 제1조, 별표)

나.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정의규정 삭제함(안 제2조)

다.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3호·제4호)

-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 제한

라. 포상금 지급절차 구체화함(안 제7조)

마. 포상금 환수조건 추가함(안 제8조)

#### 4. 개정규칙안: 붙임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입법예고 기간: 2018. 6. 11. ~ 2018. 7. 3.(22일간)

####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평생교육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 담당부서: 거창군청 평생교육센터 **☎ 055-940-8703, fax 055-940-870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평생교육센터 청소년담당 **☎055-940-8703** 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칙명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기타 전자통신매체”를 “전자통신매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청소년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u>청소년유해환경 신고</u>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p> <p>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p>  <p>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3. (생략)</p> <p>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보호법</u>」 제49조에 따라-----</p> <p>-----</p> <p>-----</p> <p>-----</p> <p>-----</p> <p>-----</p> <p>-----</p> <p>&lt;삭 제&gt;</p>  <p>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한정한다.</p>  <p>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전자통신매체-----</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p> <p>-----</p> <p>② 제1항에 따라-----</p> <p>-----</p> <p>-----</p> <p>-----</p> <p>-----</p> <p>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 중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p>

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신 설>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 <u>청소년 보호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30조의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u>법 제30조제2호</u> 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u>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 행위를 하게 하거나</u>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u>법 제30조제3호</u> 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u>법 제29조제1항</u> 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u>법 제16조제1항</u> 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u>법 제30조제4호</u> 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u>청소년의 장애인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u>	10만원
<u>법 제30조제5호</u> 를 위반하여 <u>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u>	10만원
<u>법 제30조제6호</u> 를 위반하여 <u>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u>	10만원
<u>법 제30조제7호</u> 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u>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u>	10만원
<u>법 제30조제8호</u> 를 위반하여 <u>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u>	10만원
<u>법 제30조제9호</u> 를 위반하여 <u>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u>	10만원
<u>법 제22조</u> 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u>법 제29조제2항</u> 에 따른 <u>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u>	10만원
<u>법 제28조제1항</u> 에 따른 <u>법 제2조4호가목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u>	5만원
<u>법 제28조제1항</u> 에 따른 <u>법 제2조4호가목1)·2)의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u>	5만원
<u>법 제28조제4항</u> 및 <u>제29조제6항</u> 에 따른 <u>표시</u> 의무를 위반한 행위	2만원

## 관계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209호, 2017.12.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과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과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4.>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⑦ 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⑧ 제4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⑨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시행일:2015.3.25.] 제28조제4항,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장 벌칙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2015.3.25.]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23호, 2017.10.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목개정 2017.10.31.]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16-0096	견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6. 7. 4.
안건명	창원시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li> </ul> </li> </ul>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창원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모순·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생략~

마지막으로, 창원시조례안에서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고, 이러한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창원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모순·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원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